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8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 백승아 · 모경종 · 송옥주

염태영 • 이성윤 • 민형배

박해철 · 김용만 · 김동아

이재관 · 박희승 · 김 윤

조계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의견제

출 관련 업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 2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원이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교육활동보호조사관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의 임명·자격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
<u>육감의 의견 제출)</u> ①·② (생	<u>육감의 의견 제출 등)</u> ①·②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
	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
	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u>해야 한다.</u>
<u><신 설></u>	제17조의2(교육활동보호조사관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
	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
	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
	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
	동보호조사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
	조사관의 임명·자격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